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의원님 여러분!

국민의힘 송파구 제3선거구 임춘대 의원입니다.

□ 제332회 임시회에 본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 본 의원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단순한 거래 공간이 아니라,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유통 인프라이자 서울시 경제 활력의 핵심 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급변하는 유통 환경과 물류 기술의 발전에 맞춰 도매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야말로 시민과 시장 종사자 모두를 위한 필수적 과제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모두 농수산물 유통체계의 현대화와 효율성 제고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실 것입니다. 서울시 역시 농

수산물도매시장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상위법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장의 변화된 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 그러나 현재 서울시의 조례는 도매시장 내 거래 분쟁 발생 시 신속하고 전문적인 조정을 위한 체계가 미흡하고, 팻릿 출하를 통한 하역기계화와 물류효율화를 위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과도하게 증가하고 있는 물류운반장비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과 불낙, 판매원포 정정 현황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방안이 미비한 상황입니다.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서울시는 도매시장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조례」를 개정하여 원활한 농수산물 유통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이번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43조 제3항을 신설하여, 분쟁조정위원회 내에 분쟁조정관

을 둘 수 있도록 하고, 분쟁 심의·조정 전 책임 소재의 판단과 손
실지원 수준 권고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
련하였습니다.

- 안 제52조 제3항을 신설하여, 도매시장 개설자가 농수산물의 펠
릿 적재 출하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하역기계화와 물류효율화를 통한 도매시장 경쟁력 향상
을 도모하였습니다.
- 안 제52조 제4항을 신설하여, 시장 종사자가 운용하는 물류운반
장비에 대해 적정대수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
련하여 도매시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물류체계를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 안 제56조의2를 신설하여, 도매시장의 경매에서 낙찰되지 아니하
거나 판매원표를 정정한 현황을 분기별로 실태조사하고, 개설자
가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동료 위원님 여러분!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현대화와 효율성 제고는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과 시장 종사자들의 생계에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가 확립되고, 첨단 물류 시스템을 갖춘 경쟁력 있는 도매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부디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